

공 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공고 제 2016 - 16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양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3조 지원대상을 첫째 아이 부모로 개정

나. 제4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금액 확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 185(등촌2동 512-1) 강서구의회

(전화 : 2600-1807, 팩스 : 2600-1840)

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모든 신생아”를 “첫째 아이”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10만원”을 “30만원”으로 “20만원”을 “50만원”으로 “30만원”을 “70만원”으로 “50만원”을 “10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